

# 항 고 장

## 1. 항 고 인(고발인)

시민활동가 : 자유연대 대표 이희범,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3층

연 락 처 : 02-737-0717, 02-733-5678

## 2. 피고발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소속 공무원 한창옥, 김주현, 박상윤

## 3. 항고취지

고발인은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22호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임진철은 피고발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2020. 10. 16. 자로 불기소처분(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발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는 충분하여 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이 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항고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서 그 근거는 고발인들이 철거를 요청한 전두환 전 대통령 조형물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 처분 등의 사전 통지, 대집행 영장 발부 및 영장 통지를 하였고, 설치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하여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합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이에 반하여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그런데 민원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피고발인들은 2019. 12. 16. 경 민원을 접수한 이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함에도 2019. 12. 19. 3차 계고 처분을 하고 나서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가까이 민원처리를 지체하다가 2020. 2. 21.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및 통지를 하였습니다. 영장발부를 하고 나서도 즉시 대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2020. 2. 27. 또다시 계고처분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계고처분이 3차까지 나갔으면 영장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영장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2020. 3. 4.경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5.18단체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쯤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공권력이 범죄자의 처분을 기다려 뒷수습하는 무능력한 행태가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주소는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우파탄압 좌파특혜의 불공정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문제의 불법조형물이 전두환 동상이 아니고 문제인 동상이었다면 이처럼 오랜 기간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격이 가미된 조형물을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폭행하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수개월을 방치하고 범죄자들

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문제의 불법조형물을 광주시에 가지고 가서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증오와 폭력성을 조장하는 범죄행위가 계속되도록 공권력이 합동하여 방조하는 이 사태에 대하여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압수했어야 할 불법조형물을 광주에 가지고 내려가도록 편의를 봐 준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합니다. 광주에 전시되고 있는 불법조형물을 즉시 압수하여 폐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즉시 폐기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민원을 수회 제기하고 고발까지 하여도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민원이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 범죄자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도록 처리를 끝다가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이나, 범죄가 근절되지 않게 방조하는 행태가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조속하게 처리하지 않아 1년 내내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중앙에서 지방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 면피용으로 계고장이나 발부하면 끝인가요? 적극적 행정집행을 하지 않은 공무집행의 행태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귀청의 각하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법집행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재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 검찰답게 대한민국에 아직은 실질적인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5.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관련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관련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6. 증거자료

- ◆ 광주시에 전시된 전두환 불법조형물 사진 - 별첨
- ◆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두환 동상 폭행 및 모욕 동영상

5.18단체의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다!

2020. 4. 27. ▶ <https://www.youtube.com/watch?v=6surpMtwkQw>

2020년 11월 13일

고발인        이희범    (인)

                  전민정    (인)

# 서울고등검찰청 귀중